

【 1 】 제28회의회(임사회)회기결정의건

제의년월일 : 1994. 8. 3.

제 의 자 : 의 장

제안이유

제28회 임사회회 효율적인 운영과 안건 심사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기 위함임.

주요골자

회기 : 1994. 8. 10 ~ 8. 10 (1일간)

【 2 】 양주군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

발의년월일 : 1994. 7. 29.

발 의 자 : 우충국의원외 1인

제안이유

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시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, 진술을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한 비용지급을 정하려는 것임.

주요골자

- 가.증인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, 현지교통비, 숙박료, 식비로 함. (안 제2조)
- 나.의원, 공무원, 정부 투자기관 임직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함. (안 제3조)
- 다.비용의 지급은 국내여비 규정 별표 2의 제4호를 준용함. (안 제4조)
- 라.허위진술, 감정등에 대하여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함. (안 제6조)

양주군 조례 제 호

양주군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